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

중소·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



지원대상

●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
- *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에서 확인)
- * 지원제외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,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

지원요건

● (기업요건)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

- ① 정년연장(1년 이상)
- ② 정년폐지
- ③ 재고용(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, 1년 이상 근로계약)

* 다만,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% 초과한 기업은 제외

- (근로자요건)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

- * (지원제외자)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 ③ 월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

지원수준 및 기간

- 지원수준: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, 최대 3년*간 지원(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% 및 최대 30명 한도)

- *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,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

신청방법
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·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(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)

